

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2023. 3.

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

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제안일자 : 2023. 3. 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제안이유

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,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감사기간은 8일간으로 한다.(2023. 6. 2. ~ 6. 9.)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 복지동행국, 도시환경국, 보건소, 동 주민센터, 마포복지재단으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(9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실, 동 주민센터 등으로 한다.

3. 관계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) 제49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2294호, 2021.12.31.) 제41조~제53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, 제5조 등

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1. 감사의 목적

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,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2023. 6. 2.(금) ~ 6. 9.(금) [8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(부서)

복지동행국, 도시환경국, 보건소, 동 주민센터, 마포복지재단

4.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복지도시 위 원 회	위원장 및 부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	복지동행국	복지도시 위원회실	장홍용	이지에
		마포복지재단			
		도시환경국		신준호	박철호
		보 건 소			
		동 주민센터	동 주민센터	장홍용	이지에

5. 감사일정

일 정	감 사 대 상	비 고
2023. 6. 2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- 아현동 주민센터 - 서교동 주민센터 	
2023. 6. 5.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○ 복지동행국 행정사무감사 - 주민생활복지과 - 생활보장과 - 어르신동행과 - 장애인동행과 	
2023. 6. 7.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지동행국 행정사무감사 - 가족행복지원과 - 아동청소년과 - 교육정책과 - 마포중앙도서관 	
2023. 6. 8.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- 주택상생과 - 자원순환과 - 도시계획과 - 건축지원과 - 맑은환경과 - 공원녹지과 	
2023. 6. 9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- 보건행정과 - 위 생 과 - 건강동행과 - 의 약 과 	

6. 감사요령

감사는 복지동행국과 도시환경국 및 보건소 각 과, 동 주민센터, 마포복지재단 별로 구 행정에 관하여 보고 및 질의, 서류제출 요구와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7. 감사 진행순서

- 감사실시 선언
- 위원장 인사
- 증인선서
-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
- 업무보고
- 감사실시(필요시 현지 확인)
- 감사종료 선언

8. 행정사항

-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.
-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 한다.
-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정에 따라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, 감사위원 변경, 감사대상기관의 축소 등은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.